#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2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김병기·박지원·강준현

허 영・임광현・위성곤

서삼석 • 진성준 • 한준호

김남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한편,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 송을 지원하고 있음.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 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, 소비자소송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

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58조, 제66조, 제68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 제목 "(처리기간)"을 "(처리기간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"30일"을 "60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고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 제목 중 "기간"을 "기간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"30일"을 각각 "60일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의 진행상황을 통지하

여야 한다.

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8조의5(소송지원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
  - 2.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 소가 제기되어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
  -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대상의 기준, 소송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 <u>처리기간</u> ) 원장은 제55조	제58조( <u>처리기간 등</u> ) <u>①</u>
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	
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	
부터 <u>30일</u> 이내에 제57조의 규	<u>60일</u>
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	
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	
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	
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	
청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피해의</u>	<u>&lt;단서 삭제&gt;</u>
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	
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	
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	
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	
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	
<u>다.</u>	
<u>&lt;신 설&gt;</u>	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
	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
	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
	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
	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
	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
	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와 기
	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

#### <신 설>

제66조(분쟁조정의 <u>기간</u>) ① 조정 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<u>30일</u>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.

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지하여야 한다.
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
구제절차의 처리기간을 연장하
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의 요
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의 진
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66조(분쟁조정의 <u>기간 등</u> ) ① -
60일
<u> </u>
②
60일
<u></u>
· 
<u>_</u>
·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
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하는
경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
요청에 따라 분쟁조정의 진행
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8조의5(소송지원) ① 원장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

   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

   사건
- 2.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
   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
   절차가 진행 중 소가 제기되어 의해구제절차 또는 분쟁
   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
-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대 상의 기준, 소송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.